

의안 번호	249
----------	-----

제출년월일: 2002.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 요 골 자

200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심의대상은 토지매각 2건, 3필지, 8,624㎡와, 공유재산 인접에 위치한 개인의 토지와 790㎡ 썩을 취득, 처분하는 교환 1건 입니다.

1) 풍력발전시범단지 부지 매각

강원도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관령 풍력발전시범단지 건설” (총 9,000 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3-2004.10월 까지 풍력발전기 6기 설치) 부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도암면 황계리 477번지 외 1필지, 4,734㎡를 (공시지가 가액 3,934천원) 매각하고자 합니다.

2) 광희특수전문대학 부지내의 균유림 매각

광희특수전문대학은 2001.9.13. 총 50필지, 143,253㎡ 규모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되었으며, 그 중 국공유재산은 9필지, 28,974㎡(20%)로서 국(재정경제부 소관) 토지는 2001.11.9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하였으며, 국(농림부,건설교통부) 토지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유재산인 약수리 산54번지 임야 14,380㎡중 3,890㎡도 공공시설 입지승인 지역에 편입되어 목적외 처분이 제한되고 사업목적에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므로 광희학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3) 잡종재산 교환

개수리 322-1번지 전 9,450㎡ 소유자(오정희)가 인접한 균유지인 개수리 327번지 전 3,045㎡와 경계부분 굴곡이 심하여 사유지뿐 아니라 균유지도 경작이 불편하므로 790㎡씩을 취득, 처분하는 교환으로 토지경계를 직선화하여 토지관리를 편리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2000.10.2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용,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토지경계를 직선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 평창군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게 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은 후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

-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라. 지적도 “별첨”

총 관 표 (7-1)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구 분	합 계			당 초			변경 계획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합계	토지	11	132,192	612,186	10	131,402	607,375	1	790	4,811
		건물	5	2,655	2,240,626	5	2,655	2,240,626			
		기타									
	매입	토지	10	131,402	607,375	10	131,402	607,375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90	4,811				1	790	4,811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5	2,655	2,240,626	5	2,655	2,240,626				
	기타										
처 분	합계	토지	3	9,414	8,362				3	9,414	8,362
		건물									
		기타									
	매각	토지	2	8,624	4,404				2	8,624	4,404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90	3,958				1	790	3,95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2년도 교환재산 목록(7-3)

회계명: 일반회계 (자체심의 포함)

(단위: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 환 면 적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구 분	지 목	소 재 지	지 적					
1	취득	전	개수리322-1	9,450	790	4,811	2002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증진 (경계 직선화)	오정희
	처분	전	개수리 327	3,045	790	3,958			
	취득								
	처분								
	취득								
	처분								
합 계	취득	토지	1 필지	9,450	790	4,811			
	처분	토지	1 필지	3,045	790	3,958			

관 계 법 규 (발췌)

지 방 재 정 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2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청사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5. 재산의 처분기준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수 있다.

⑥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의 대규모 사유지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6조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

(2)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가) ⑦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목적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수 있는 재산으로 사업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재산

(3) 공공 목적의 매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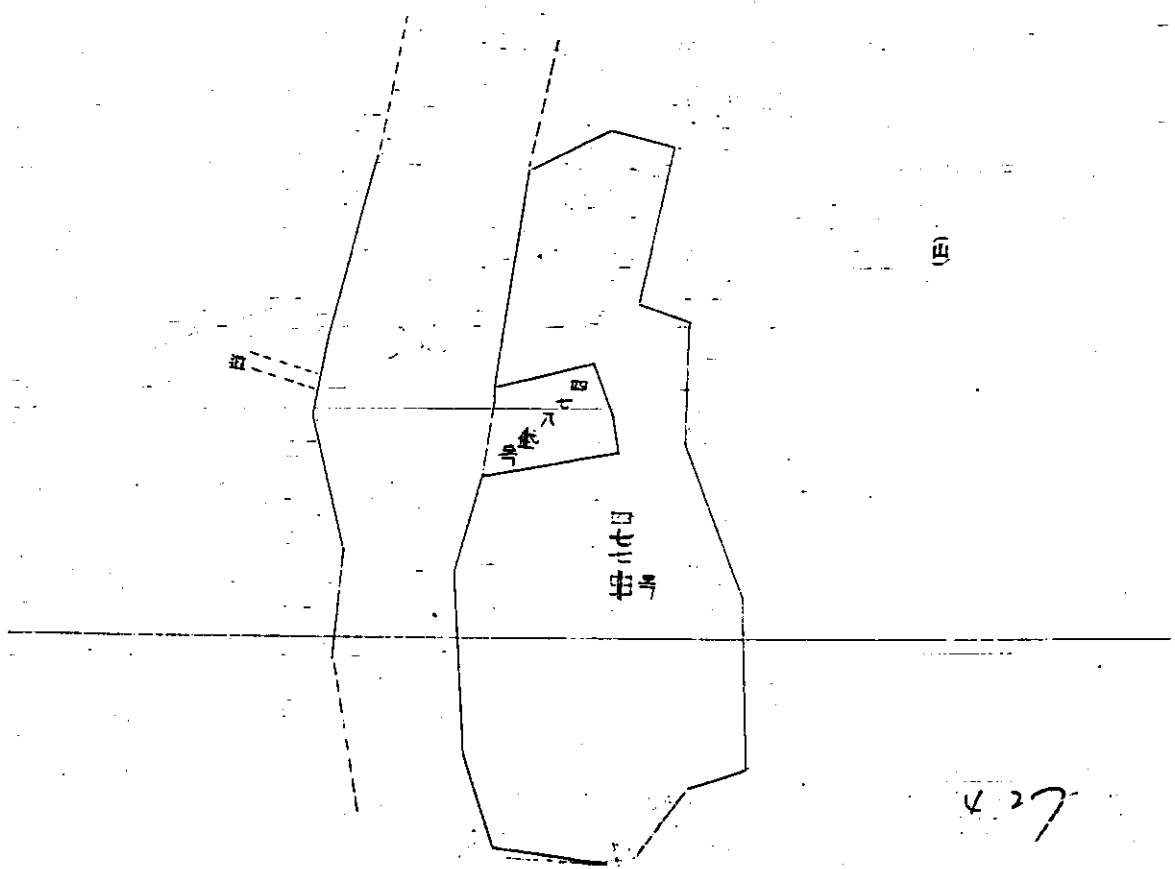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및 공공용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 재산의 교환기준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2)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3/4 미만인 때에는 교환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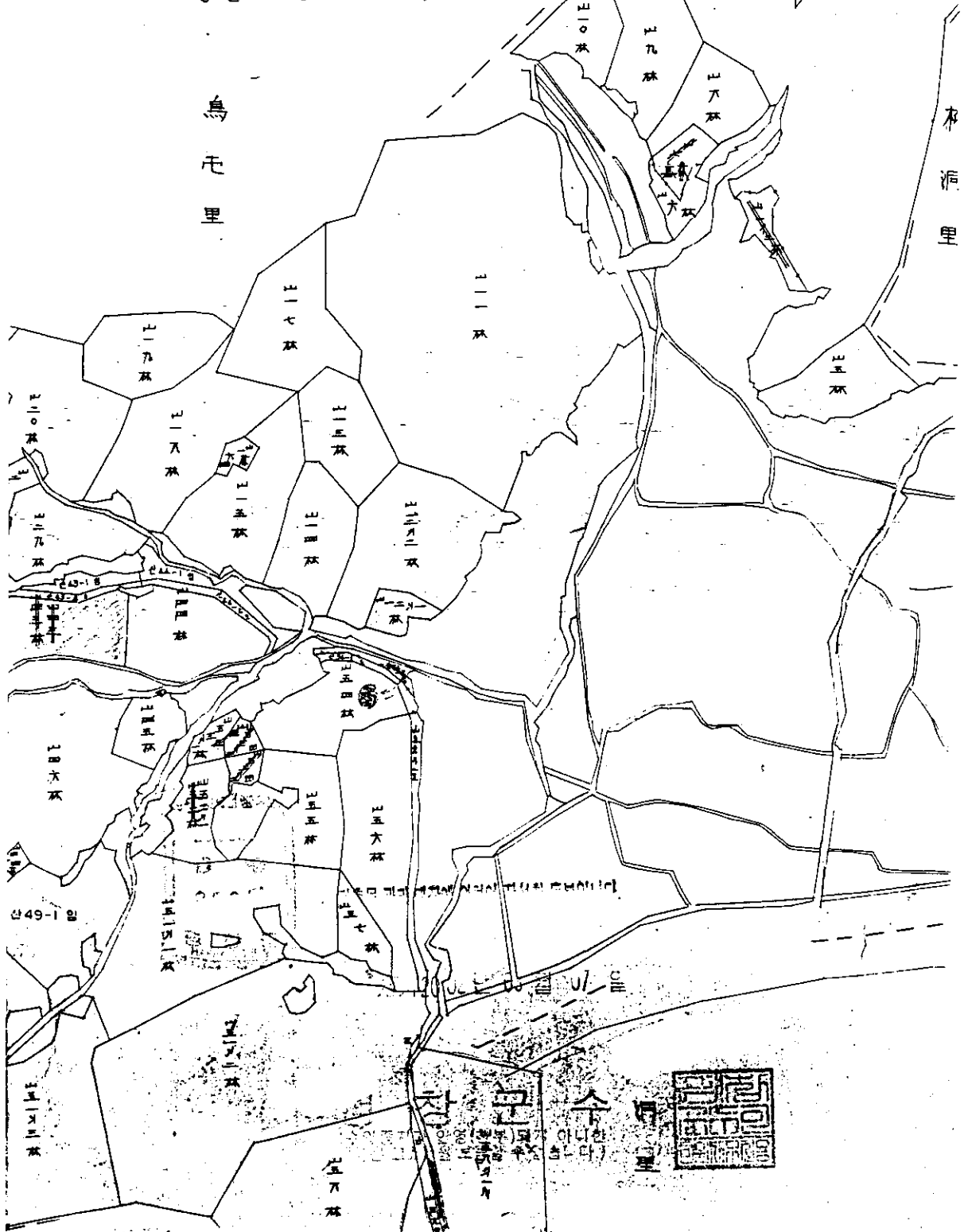
강원도 원창군 도강읍 민평계리 497 번지 축척 1/200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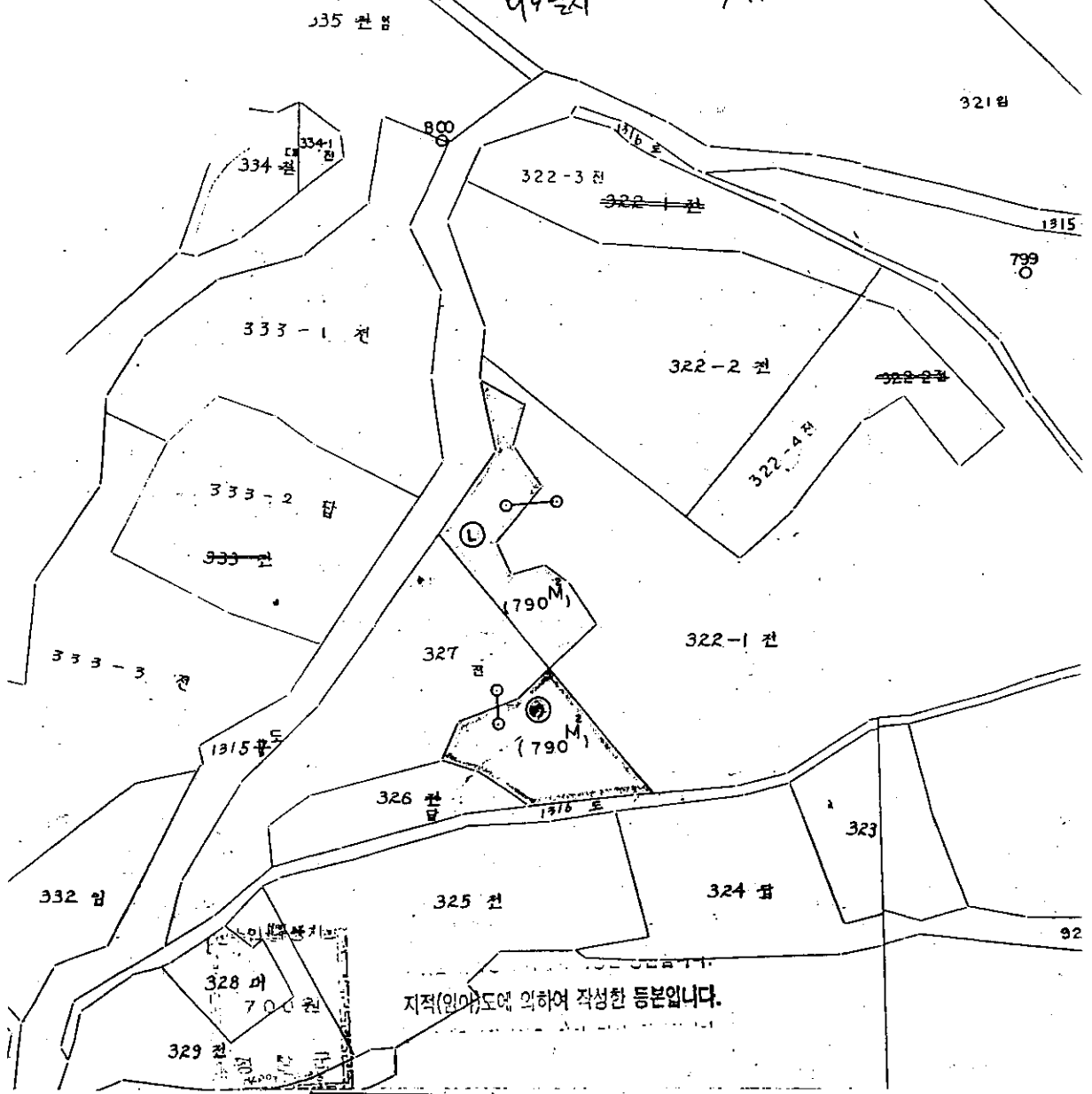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면역리 산지 지주 추적

烏屯里

本洞里



면 개수리 322-1번지 축척 1/200
 리수필지



지적(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지번	지목	지적	교환예정면적	부호	소유자	비고
322-1	전	9,450	790	㉔	오정희	교환
327	전	3,045	790	㉓	맹창근	"